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446
----------	------

2026년 3월 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2월 9일, 남궁역 의원

나. 회부일자: 2026년 2월 12일

다. 상정일자: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6년 3월 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남궁역 의원]

가. 제안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에서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 또는 공사에서 나무를 베는 등의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규정하고자 함.
- 법령에 따라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바, 관련한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법령에 따른 금지행위 적용대상을 반영함(안 제22조제1항).
- 2) 허가받지 않은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또는 사업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의4).
- 3) 위반행위의 동기와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적용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를 베는 등의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규정하며, 금지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시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¹⁾,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²⁾,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³⁾는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이하 “도시공원 등”)에서 특정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 또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시공원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죽목(竹木)을 베는 행위’,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법령에 따른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벌칙에 처하고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법적 금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이 공사나 사업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규정하고 위반의 정도와 횟수, 동기 등에 따라서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상한액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1)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속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속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안 제22조의4에서 ‘금지행위 관리·감독’이란 기본적으로 공사 또는 사업 시행 주체(사업자)의 허가받지 않은 행위 또는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관리청이 철저히 감독하는 것을 의미함과 함께 사전에 계획(허가)되지 않은 행위를 사업 변경(설계변경) 없이 추진하는 등 금지행위의 원인을 관리청이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바, 사업 추진 시 유의해야 할 것임.
- 한편, ‘죽목(竹木)을 베는 행위’에서 ‘죽목’은 사전적으로 대나무(竹)와 목본성 식물인 나무(木)를 의미하여 교목, 관목, 아교목 등의 식물로 한정되고 있지만 법의 취지는 도시공원 등의 보전 및 관리, 무분별한 수목 훼손 방지를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죽목(竹木)을 베는 행위’는 ‘식생을 훼손하는 행위’로 광의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있을 것임.
- 특히, 정원도시국은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 정원(1,007개소)과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정원(111개소)을 조성하면서 목본과 함께 초본(초화류) 식재를 병행하고 있는바, 사전적으로 초본이 ‘죽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원(개소별)’ 자체가 목본이 포함된 하나의 통합된 조경시설이라 할 수 있으므로 초화류의 식생 훼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금지행위 관리·감독)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법 제27조제1항 단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죽목(竹木)을 베는 행위, 흙과 돌을 채취하는 행위 등의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또는 사업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56조제1항”을 “법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금지행위 적용대상) ①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서 <u>법 제49조제2항</u>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생략)</p> <p><u><신 설></u></p>	<p>제22조(금지행위 적용대상) ① ----- ----- <u>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u> -----.</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22조의4(금지행위 관리·감독) 시장</u>은 <u>법 제24조제1항, 법 제27조제1항 단서, 법 제38조제1항</u>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u>죽목(竹木)을 베는 행위, 흙과 돌을 채취하는 행위 등의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또는 사업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u></p>
<p>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이 <u>법 제56조제1항</u>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u>영 제51조제1항 별표 4</u>와 같다.</p> <p><u><신 설></u></p>	<p>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 -- <u>법 제56조</u>----- -----.</p> <p>② <u>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u></p>

② ~ ④ (생략)

태료 금액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